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7883 제안연월일: 2007. 11. 22. 제 안 자: 국회운영위원장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65조의2제2항제2호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"을 "「공직선거법」"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"國家公務員法"을 각각"「국가공무원법」"으로, "地方公務員法"을"「지방공무원법」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農業協同組合·수산업협동조합법"을"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 협동조합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"政黨法 第6條"를 각각"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6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경우에는 제2항"을 "경우 제2항제1호"로 한다.

- ②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
- 1.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국무위원·국가정보원장·국세청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 또는

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

- 2. 대통령당선인이 「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
- 3.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의 후보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의장의 당적보유금지)	제20조의2(의장의 당적보유금지)
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	①
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	
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	
수 없다. 다만, 국회의원총선거	
에 있어서 <u>공직선거및선거부정</u>	<u>「공직선거법」</u>
<u>방지법</u> 제47조의 규정에 의한	
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	
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	
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	
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第29條(兼職) ①議員은 政治活動	第29條(兼職) ①
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	
수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	
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	
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.	
1.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	1. <u>「국가공무원법」</u>

된 國家公務員과 <u>地方公務員</u>
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
員. 다만, <u>國家公務員法</u> 제3조
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
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은 제

- 2. ~ 4. (생략)
- 5. 農業協同組合・수산업협동조 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任・職員
- 6. <u>政黨法 第6條</u>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
- ② (생략)
- ③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教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 는 任期중 그 教員의 職은 休 職된다.
- ④·⑤ (생 략)

「지방공무원
법
<u>「국가공무원법」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</u>
업협동조합법
6. <u>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
<u>.</u>

4· (5) (현행과 같음)

第65條의2(人事聽聞會) ① (생략)

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국무위원 ·국 가정보원장·국세청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.

第65條의2(人事聽聞會) ① (현행 과 같음)

②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인사청문회를 연다.

- 1.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국무위원·국가정보원장·국세청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
- 2. 대통령당선인이 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 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
- 3.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

③헌법재판소 재	판관 후보자가
헌법재판소장 후	보자를 겸하는
경우에는 제2항의	l 규정에 불구
하고 제1항의 규	정에 따른 인사
청문특별위원회의	인사청문회를
연다. 이 경우 저	112항의 규정에
따른 소관상임위	원회의 인사청
문회를 겸하는 것	으로 본다.

④ (생 략)

선거관리위원회	위원의	후보
<u>자</u>		
③		
경우 제2항제1호		
④ (현행과 같음)		